

2025년 선화노인요양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조 목 적

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 2조 계약기간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,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.
2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(부분 계약 변경)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조 입소 · 이용료 납부

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, 입소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%,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타 경감대상자는 12%, 8%를 본인이 부담하며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.

※ 2025년 1월부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.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」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, 다만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6년 12월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,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이용수가 (시설 이용료)를 다음과 같이 차등화 할 예정이다.

가. 입소 이용료(본인부담금) 내역

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2.1 : 1 (단위 : 원)

등급 \ 수가	1일	31일	본인부담금(31일)				비 고
			일반 20%	경감대상자		기초생활 수급자	
				12%	8%		
1등급	90,450	2,803,950	560,790	336,470	224,320	0	
2등급	83,910	2,601,210	520,240	312,150	208,100	0	
3~5등급	79,240	2,456,440	491,290	294,770	196,520	0	

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2.3 : 1 (단위 : 원)

등급 \ 수가	1일	31일	본인부담금(31일)				비 고
			일반 20%	경감대상자		기초생활 수급자	
				12%	8%		
1등급	86,03210	2,666,930	533,390	320,030	213,350	0	
2등급	79,810	2,474,110	494,820	296,900	197,930	0	
3~5등급	75,360	2,336,160	467,230	280,340	186,890	0	

나. 요양시설 축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내역

(단위 : 원)

진료비용	일반(20%)	경감 대상자		기초생활수급자
		12%	8%	
초진 18,410원	3,680원	2,200원	1,470원	0
재진 13,160원	2,630원	1,570원	1,050원	

다. 기타비용부담액(비급여항목) 내역

(단위 : 원)

비급여 항목	1일	31일	비 고
식 비	7,500(2,500 * 3식)	232,500	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

입소자 또는 보호자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구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.

제 4조 계약자 권리 및 의무

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원과 입소자, 보호자 간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신원인수인 및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-1 입소자의 권리

- 요양원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
-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받을 권리
- 입소자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
(사생활, 학대 방지, 식생활, 위생, 의료 및 건강, 프로그램, 교육, 진정권 등)
- 타 입소자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

1-2 입소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
-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-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-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2-1 보호자의 권리

-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(단, 병원 입원 시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을 권리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요양원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

2-2. 보호자의 의무

- 입소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
-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입소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
-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

제 5조 계약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가.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결정 할 때
- 나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다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라.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(단,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 6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요양원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,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단,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.

- 가.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나.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다.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약서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, 갱신했을 경우
- 라.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의 추가나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